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4
------------------	------------

제출년월일 : 2001.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가격표시에 관한 관리권한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은 조례로 되어있어 이를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 계량에관한법률(2000.6.23) 및 석유사업법령(2000.7.29)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불부합된 일부 위임 업무를 법령에 부합 토록 조례로서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경 제 과 〉

-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임 규칙에 삽입

〈 자원관리과 〉

- 계량에관한법률(2000.6.23) 및 석유사업법령(2000.7.29) 개정으로 계량 및 석유관련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자원관리과 소관 “제11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자원관리과	11	○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 (계량수리업, 증명업에 한함)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
	12	○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계량수리업,증명업에 한함)	동법 제22조
	13	○ 검사(정기검사의 증인 포함)	동법 제16조 및 제17조
	14	○ 보고 및 수시검사등 (판매업, 수리업, 증명업에 한함)	동법 제18조
	15	○ 개선명령	동법 제19조
	16	○ 부정계량기의 처리	동법 제21조
	17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동법 제33조
	18	○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일반, 이동판매소)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19조 석유사업법 제9조 및 제11조
	19	○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명령	동법 제13조제3항
	20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동법 제14조
	21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동법 제28조
	22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실시	동법 제30조
	23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동법 제38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조 표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제과	1	(생 략)		경제과	1	(현행과 같음)	○물가인정에 관한법률제29조
	2	○ <u>가격표시명령</u> 위반자에 대한 <u>과태료 부과징수</u>	○물가인정에 관한법률제29조 ○물가인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2	(<u>삭 제</u>)	○물가인정에 관한법률제29조 ○물가인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3~21	(생 략)			2~20	(현행과 같음)	
자 원 관리과	1~10	(생 략) <u>(신 설)</u>		자 원 관리과	1~10	<u><현행과 같음></u>	
		<u>(신 설)</u>			11	<u>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계량수리업, 증명업에 한함)</u>	<u>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u>
		<u>(신 설)</u>			12	<u>등록의 취소 또는 사 업의 청지(계량수리 업,증명업에 한함)</u>	<u>등법 제22조</u>
		<u>(신 설)</u>			13	<u>검사(정기검사의 중인 포함)</u>	<u>동법 제16조 및 제17조</u>
		<u>(신 설)</u>			14	<u>보고 및 수시검사 등(판매업,수리업, 증명업에 한함)</u>	<u>동법 제18조</u>
		<u>(신 설)</u>			15	<u>개선명령</u>	<u>동법 제19조</u>
		<u>(신 설)</u>			16	<u>부정계량기의 처리</u>	<u>동법 제21조</u>
		<u>(신 설)</u>			17	<u>과태료의 부과 및 징 수절차에 관한 사항</u>	<u>동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9조</u>
		<u>(신 설)</u>			18	<u>석유판매업(주유소용 제판매소)등록,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일반 이동판매소)신고수리</u>	<u>석유사업법 제9조 및 제 11조</u>
		<u>(신 설)</u>			19	<u>석유판매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u>	<u>동법 제13조 제3항</u>
		<u>(신 설)</u>			20	<u>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u>	<u>동법 제14조</u>
		<u>(신 설)</u>			21	<u>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검사</u>	<u>동법 제28조</u>
		<u>(신 설)</u>			22	<u>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실시</u>	<u>동법 제30조</u>
		<u>(신 설)</u>			23	<u>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u>	<u>동법 제38조</u>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생략)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삭제

3.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4.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권한의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한다.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중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3.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법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5. 다음 각목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 가. 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숙박 및 음식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도·소매업에 관한 권한
 - 다. 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자하는 자 및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검사) ①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정기검사의 증인) ①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보고 및 수시검사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 또는 창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장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수 있다.

② - ④.

제19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량기 또는 그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로서 그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
2. 정밀도 등의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것

제21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 기에 대하여는 그 종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 ② 계량검사공무원은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밀도등, 실양 또는 함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계량검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정지)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자

제33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① 생략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석유사업법]

제9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조건부 등록)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4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1항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제1항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④ - ⑤ 생략

제14조(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 때

② - ④ 생략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대납처분 또는 지방세대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생략

제2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석유 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0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 - ⑦ 생략